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 동 운 의원)

의안 번호	516
----------	-----

발의연월일: 2024. 2. 8.

발 의 자: 이동운 · 이주한 · 김한태
오연환 · 백일권 의원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이 실시하는 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급식의 공공성, 공익성과 급식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및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신설)
- 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 협업, 위탁 방법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신설)
- 다. 다른 법 개정 명칭 반영, 부적절한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외)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을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이상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식품

제3조의 제목 “(식품비등 급식경비 지원 분담 등)”을 “(지원규모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한다”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시”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다음 각 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고,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대구시 교육감”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기별로”를 “정산 시”로 한다.

-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을 “정산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및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입, 수집, 가공 및 공급 등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급식 수요 실태조사,

식재료 구매지원, 식재료 품질·안전성 관리, 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 등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수급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급식 관련 기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 소속 공무원,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3. (생략)</p> <p>4. “우수 식재료”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p>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또는 그 가공품</p> <p>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GAP)</p>	<p>제2조(정의) ----- -----.</p> <p>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4. ----- ----- <u>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u>----- ----- ----- ----- ----- -----.</p> <p>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u>친환경농산물 인증품</u> ----- -----</p> <p>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u>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u></p>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는 축산물

라. (생략)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을 포함한다)

<신설>

바. (생략)

5. (생략)

제3조(식품비등 급식경비 지원 분담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경비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우수 식재료비 지원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시와 각각 1/2씩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다. -----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

라. (현행과 같음)

<삭제>

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이상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식품

마. (현행 바목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

-----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대구광역시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고,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대구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기타 급식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9조(지원체계 등)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경비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다음 각 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지원신청) ① -----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체계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조금을 교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구입한 후, 식재료 공급자에게 우수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본은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생략)

제11조(집행결과 정산)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 정산 시 -----
-----.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집행결과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산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및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입, 수집, 가공 및 공급 등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서

<신 설>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급식 수요 실태조사, 식재료 구매지원, 식재료 품질·안전성 관리, 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 등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수급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급식 관련 기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 소속 공무원,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